

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근로자(조리 및 미화)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

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근로자(조리 및 미화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7일
국립인천검역소장

1 최종 합격자

구분	직종	성명	비고
최종합격	공무원근로자	정○녀	응시번호 1

2 합격자 등록일정

상기 합격자는 아래 합격자 등록일정 및 관련서류를 참조하시어 차질 없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기간 내 미등록시는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할 예정입니다

□ 제출기간 : 2026. 6. 17.(수) ~ 2026. 6. 24.(수) 18:00까지

□ 제출장소(등기우편 또는 방문): 국립인천검역소 서무팀

- 주소 :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, 국립인천검역소 서무팀 (우: 22346)

구 분	내 용
4대보험*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재출자는 제출 불요 • 합격자 발표시 우편, 방문 제출 • 경력확인 교차 검증을 위함 •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 (2026년 3월 17일 이후 발급서류 인정)
주민등록등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번호 포함 •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 (2026년 3월 17일 이후 발급서류 인정)
증명사진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명함 사이즈(3*4cm)
가족관계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 (2026년 3월 17일 이후 발급서류 인정)
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*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 (2026년 3월 17일 이후 발급서류 인정) • 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
통장사본 1부	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(서식 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필서명 필수
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부 (서식 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필서명 필수
보건증 1부*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 (2026년 3월 17일 이후 발급서류 인정) • 1년마다 갱신 필요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서식 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필서명 필수

* 4대보험: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

**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검사 비용은 기관에서 전액 지원 예정

3 공지사항

□ 합격자 통지 후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□ 서류제출이 기한 내에 어려우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사담당자(☎ 032-883-7502)에게 미리 연락 바랍니다.

[서식2]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에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에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채용 예정자 신원 조회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조회
2	범죄경력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